

운행안전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(제7조의9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라.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. 이 경우 운행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경우	법 제40조의3 제1항제1호	인증 취소		
나. 법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기준에 미달한 경우	법 제40조의3 제1항제2호	개선명령	개선명령 및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	인증 취소
다. 부적합한 실외이동로봇을 생산한 경우로서 보행자 등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	법 제40조의3 제1항제3호	개선명령	개선명령 및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	인증 취소
라. 법 제40조의2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0조의3 제1항제4호	인증 취소		